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2. 7)

1. 심사 경과

가. 2004. 12. 2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12. 2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64호)

다. 2004. 12. 7 :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개정 이유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가 200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야 하나 기금의 계속적인 운용 등으로 이 조례의 계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유효기간(2004. 12. 31)을 삭제함
- 2) 회계공무원 관직의 업무담당별 용어를 수정함
 -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 ⇒ 체육업무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주사 ⇒ 체육업무담당주사

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체육기금조성운용조례가 2004. 12. 31자로 폐지되어야 하나 본 기금의 계속적인 운용 등으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유효 기간을 삭제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하는 주요내용 중

- 제7조의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체육담당주사”에서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은 회계공무원의 지정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 조례 제375호(99. 7. 5) 부칙 제2항의 2004. 12. 31까지로 된 유효 기간을 삭제 하는 것은 2004. 7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약 10억 5천여 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 기금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이삼수 위원	○ 현재 체육기금이 약 10억 5,000여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의 사용처는?	총무과장 김영고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조성된 기금이 정확히 1억 8,000만원인데 그중 1억 4,000만원은 재적립해 놓고 4,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3,300만원, 최우수 선수 육성비 700만원 해서 4,000만원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임

질의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최갑현 위원	○ 체육회기금을 초·중·고의 유도나 수영, 농구등 우리시의 대표적인 체육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개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람	총무과장 김영고	○ 체육회와 협의해 보겠음
김현철 위원	○ 사천체육관앞의 사천시체육회 명의로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가?	총무과장 김영고	○ 그 부분은 확실히 알수 없음. 현재까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논의된바 없음
성재윤 위원	○ 체육회명의로 부지는 시로 기부채납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람	총무과장 김영고	○ 재산보유상태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